

의안번호	제514호
의 결 연 월 일	2013년 월 일 (제322회)

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·
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13년 6월 21일

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·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51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3. 6. 21.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- 「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」 제6조에 따라 「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」를 제정하였으나,
- 동 조례의 근거 조항인 「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」 제6조의 전면개정(대통령령 제24346호, 2013. 5. 6. 시행)으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 폐지
- 규정 개정 전 : 제6조(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)
 - ④ 기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규칙으로,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·광역시 및 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교규칙으로,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다.
- 규정 개정 후 : 제6조(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·운영)
 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고, 공립·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3. 5. 16. ~ 2013. 6. 5.) : 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**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·운영에
관한조례 폐지조례안**

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[시행 2013.5.6][대통령령 제24423호, 2013.3.23]

○ <개정전>

- 제6조(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·운영)** ① 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분쟁조정위원회"라 한다)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이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.
-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중에서 각급학교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- ④ 기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규칙으로,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·광역시 및 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교규칙으로,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각 정한다.

○ <개정후>

- 제6조(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·운영)**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며,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1.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
 2.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
 3.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
 4.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(이하 "학교교권보호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그 학교의 교원,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호선)한다.
-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- 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1.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
 2.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
 3.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고, 공립·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.